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43호
----------	------

2019. 4. 22

건명	논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도시재생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산시장	제안년월일	2019. 4.12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년월일	2019. 4.12.

보 고 내 용

제안이유

- 시영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함.

주요내용

- 시영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(안 제4조제1항 제7호)
- 시영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신청서 제출 생략하고 그 관리주체가 청구하여 전기료 지원 조항 신설 (안 제5조제4항)

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(관리비용의 지원)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